



http://www.dw.ms.kr

『참과 꿈으로 미래를 키워가는 동원인 육성』

가 정 통 신 문

- 발송일 2023. 4. 21.
- 발송처 군산동원중학교장

제 목

2023학년도 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안내

안녕하십니까?

2023학년도 동원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및 기타 사항으로 인해 **지필고사**에 미응시할 경우 각 기준에 따른 인정점 부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1.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

- ①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**인정결시 처리(100% 인정비율 부여)**하는 것이 원칙임
- ② 고사 기간 중 **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- 의료기관(선별진료소 포함)의 검사결과서(PCR,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, 진료확인서) 필수 확인**, 단, 부득이하게 검사결과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, 지정의료기관의 방문확인서 확인
 - ※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,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,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음.
 - ※ 확진자 급증으로 입원·격리 통지서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며 동거가족 대상 일괄 격리통지 가능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(24시)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로 봄(학생건강정책과-1361, 22.2.17.)
 - ⇒ 문자통보된 입원·격리 통지의 스캔본도 평가 시 출결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
- ③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

2. 100% 인정비율 적용 대상 학생

- ① 지진, 폭우, 폭설, 폭풍, 해일 등의 천재지변, 법정 감염병(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)으로 인한 결석
- ②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
- ③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“학교·시도(교육청)·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, 「학교보건법」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”으로 인한 결석
- ④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등
 - ※ 해당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

3. 기타 사유 학생

대상	출결처리	인정점 부여 비율	제출 증빙 자료	비고
질병 결석	○질병결석	80%	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, 결석계	
생리통	○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름	80%	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, 결석계	
기타결석	○기타결석	80%	담임교사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, 결석계	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석 포함
미인정 결석	○미인정결석	최하점의 차하점		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

4.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

$$\text{최종 인정점} = \text{기준점수} \times \frac{\text{결시고사 평균}}{\text{기준고사 평균}} \times \text{인정점 부여비율}$$

<예시>

과목	기준고사(1차고사)		결시고사(2차고사)	최종 인정점
	평균	기준점수	평균	
○○	68.0	65	62.3	47.64

* 1학기 2차고사를 **질병 결시**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

- 1) $68.0 : 65 = 62.3 : \text{인정기준점수}$
- 2) $\text{인정기준점수} = (65 \times 62.3) / 68 = 59.55$
- 3) $\text{인정기준점수} \times 0.8(\text{병결 인정점 부여비율}) = 47.64$
- 4) $\text{최종 인정점} = 47.64$

2023. 4 . 21 .

군 산 동 원 중 학



최영순